

창원시시설공단 직원 공개(경력)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시설공단 직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창원시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I. 채용직종(분야) 및 인원 : 3개 직종 31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직종(분야)		채용 직급	인원	응 시 자 격
기술직 (10)	전기설비	9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임
	기계설비	9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임
	장례지도사	9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례지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총기.사대 관리	9급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사격선수로 3년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사격선수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경기지도자 2급(사격) 이상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2급(사격)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직 (19)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19 (예비7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이 공고일 기준 이전인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면허 정지.취소 등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 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직종(분야)		채용 직급	인원	응 시 자 격
무 기 계 약 직 (2)	장례지도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례지도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시티투어해설		1	• 역사, 문화유적 관광해설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외국어 능통자 우대)

나.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채용직종(분야)		채용 직급	인원	수 행 업 무
기술직	전기설비	9급	1	• 전기설비 운용 및 안전관리,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등 전기관련 업무 수행(전기안전관리자 선임도 포함)
	기계설비	9급	1	• 보일러, 가스, 상하수도 시설관리 및 수영장 설비운영 등 기계관련 업무 수행(주말, 심야포함 교대근무 가능한자)
	장례지도사	9급	1	• 장사시설 내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례관련 업무 전반
	총기.사대관리	9급	7	• 사격장 사대운영 위한 총기, 실탄, 표적지 등 취급 및 운영관련 고객응대 및 안전관리 등 업무 수행
운전직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19	•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이동 및 운행차량 관리 등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자체 근무편성에 의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탄력근무)
무 기 계 약 직	장례지도(화장)		1	• 장사시설 내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례지도 업무 수행 (운구, 수골, 봉안 등)
	시티투어해설		1	• 시티투어 고객대상 문화해설과 고객응대 및 차량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II.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로서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 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III.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2차 시험 합격자발표	3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임용후보자 등 록	신규임용 (예정)
기술직	3. 13.(화) ~ 4. 2.(월)	3. 29.(목) ~ 4. 2.(월)	4. 5.(목)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4. 7.(토)	4. 9(월)	4. 11(수)	4. 13.(금)	4. 16.(월) ~18.(수) (3일간)	4. 20(금)
운전직, 무기계약직	(20일간)	(5일간)	(시험일공고)	인적성검사 4. 7.(토)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 시설공단 【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 및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서류심사→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면접시험→최종합격자 확정

- ① 1차 : 입사지원서 접수(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 등이 담긴 자기소개서 제출)
 -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 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 전형방법 : 서류심사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② 2차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 ▶ 전형 대상 : 입사지원서 접수자 중 기술직, 무기계약직, 운전직 합격자 전원
 - ▶ 시험 장소 : 추후 별도공지
 - ▶ 필기시험 출제 문항

채용분야(직종)		시 험 과 목		비 고
기술직	필 기 시 험	전 공 과 목	일반상식 (공통)	전공과목과 일반상식 각 25문항으로 총 50문항 (시험시간 50분)
	전 기 설 비	전 기 이 론	공공기관 채용수준	
	기 계 설 비	기 계 일 반		
	장 레 지 도 사	장 레 학 개 론		
	총기 . 사대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관련		
무기계약직 / 운전직		인·적성검사		310문항(시험시간 90분)

- ▶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및 인·적성검사 상위성적자 중 가점부여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명),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③ 3차 : 면접시험

- ▶ 전형대상 : 2차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합격자
- ▶ 전형방법 : 면접시험평정표에 의함(블라인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④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우수(상)” 등급을 평정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고 “우수(상)” 등급으로 선발인원이 미달한 경우 ‘보통(중)’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며 ‘미흡(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불가**
- ▶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 합격자 중 예비합격자(7명)**는 추후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최종 성적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

IV.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면허(자격)소지자	· 필기 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 ▶ 매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적용하고, 면허(자격) 소지자는 당해 직종에 1인 1종만 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나. 우대사항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는 면접 시 우대

V. 보수 및 복무

-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관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 등에 의하되,
- 나. 초임 호봉획정은 공단 관리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경력을 포함하여 최고 3호봉까지 인정

VI.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8. 3. 29.(목) ~ 4. 2.(월) / 5일간**
- 나. 접수방법 : <http://cwsisul.torc.co.kr> 온라인접수(24시간, 주말 접수 가능)

VII.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지원서 접수 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필기 및 인·적성검사 시	가점부여 사항 증명서	원본제출 (면허(자격)은 사본)
면접시험 시	주민등록초본(원본),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	우대사항 자료포함
최종합격 후 등록 시	신체검사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임용후보자 등록관련 일체

- 가.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나.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인정 불가

다.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마. 운전직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운전적성정밀검사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3) 택시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루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인식되지 않도록(미표기 및 마스킹 등) 발급 제출

Ⅷ.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라.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